

■ **업무내용**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Ex)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설목보판공사 등

■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 **기술능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판금제관,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철도토목, 측량
기능사보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3. **공제조항**

업종	1좌당	자본금	CC등급 이상	C등급
철도·궤도공사업	950,392원	법인 - 1.5억원 개인 - 3억원	법인 - 43좌 (40,866,856 원) 개인 - 85좌 (80,783,320 원)	법인 - 53좌 (50,370,776 원) 개인 - 106좌 (100,741,552 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4. **시설·장비**

사무실	장비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모터카1대(견인력25t), 트롤리4대(적재하중10t), 타이탬퍼2대, 레일연결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1조, 양로기1대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